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7082
----------	-------

발의연월일 : 2026. 2. 26.

발 의 자 : 곽규택 · 이현승 · 주진우
최수진 · 김은혜 · 김민전
서지영 · 안철수 · 조배숙
강선영 의원(10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할 목적으로 매크로 등 자동화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인터넷게시판 등에 게시글, 댓글 등을 반복·대량으로 게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런데 최근 선거과정에서 매크로 등 자동화프로그램 등을 이용하여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에 유리한 방향으로 댓글을 대량 작성하거나 추천·비추천 등 반응지표를 조작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판단을 방해하고, 민주적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새로운 유형의 선거범죄로서 명시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선거기간 중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화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게시글 또는 반응지표를 대량으로 게시·입력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그 위반자에 대한 처벌규

정을 마련하는 한편, 각급선거관리위원회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기록 등 자료의 열람·제출을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자동화프로그램을 통한 여론조작 행위를 방지하고,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안 제82조의4제7항 및 제8항 신설 등).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선거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2조의4제7항을 제9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7항 및 제8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⑦ 누구든지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 또는 불리하게 할 목적으로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동일하거나 유사한 내용의 글이나 동영상 등을 대량으로 게시하거나 전송하는 행위
2.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그 게시판·대화방 등에 게시된 글이나 동영상 등에 대하여 추천·비추천 또는 동의·비동의 등의 표시를 대량으로 입력하는 행위

⑧ 누구든지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지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55조제1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3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8의2. 제82조의4제7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3의2. 제82조의4제8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제261조제6항제1호 중 “제272조의3제4항”을 “제272조의3제5항”으로 한다.

제272조의3제2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제3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중전의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다른”으로,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중전의 제4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중전의 제5항) 본문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6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8항(중전의 제7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9항(중전의 제8항) 중 “제3항”을 “제4항”으로 한다.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제82조의4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한 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기록·이용기록·접속경로·비정상 접속패턴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⑦ (생략)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3年 이하의 懲役 또는 6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8. (생략)

<신설>

9. ~ 20.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者는 2年 이하의 懲役 또는 400萬원 이하의 罰金에 處한다.

1. ~ 3. (생략)

<신설>

4. ~ 8. (생략)

③ ~ ⑥ (생략)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⑤ (생략)

⑥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70조제3항·제71조제10항

시·권유 또는 요구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⑨ (현행 제7항과 같음)

第255條(不正選舉運動罪) ① -----

1. ~ 8. (현행과 같음)

8의2. 제82조의4제7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9. ~ 20.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3의2. 제82조의4제8항을 위반한 행위를 한 사람

4. ~ 8. (현행과 같음)

③ ~ ⑥ (현행과 같음)

제2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

1. -----

· 제72조제3항(제74조제2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73조제1항(관할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가 제공하는 내용에 한한다) 및 제2항· 제272조의3제4항 또는 제275조의 규정을 위반한 자

2. ~ 4. (생략)

⑦ ~ ⑫ (생략)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 (생략)

<신설>

-----제272조의
3제5항-----

2. ~ 4. (현행과 같음)

⑦ ~ ⑫ (현행과 같음)

제272조의3(통신관련 선거범죄의 조사) ① (현행과 같음)

②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제82조의4제7항 또는 제8항을 위반한 행위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당해 선거관리위원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구·시·군선거관리위원회의 경우에는 지방법원을 말한다) 수석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얻어 정보통신 서비스제공자에게 접속기록·이용기록·접속경로·비정상 접속패턴 등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하는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생략)

③ 제1항 및 제2항 또는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
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료
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하는
때에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
른 승인이 필요하지 아니하다.

1. 2. (생략)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
른 요청을 받은 자는 지체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때에는
30일 이내에 그 사실과 내용을
문서, 팩스,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해당 이용
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선
거관리위원회에서 고발·수사
의뢰한 경우에는 그 불송치결
정, 기소 또는 불기소처분을 통
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알
릴 수 있다.

⑥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또는
다른-----

-----제1항부터 제3항까
지에 따른-----
-----.

1. 2. (현행과 같음)

⑤ -----제4항-----

-----.

⑥ -----

-----제4항-----

-----.

⑦ -----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자료제공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자료의 제공요청사실 등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대장과 자료제공요청서 등 관련 자료를 해당 선거관리위원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⑦ 각급선거관리위원회 직원은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로부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제출받은 자료를 이 법 위반행위에 대한 조사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관계 수사기관에 고발 또는 수사의뢰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된다.

⑧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요청 기타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제4항-----

-----.

⑧ -----

-----제4항-----

-----.

-----제4항-----

⑨ -----제4항-----

-----.